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8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김정호·김남희·박 정

허종식 • 박희승 • 윤후덕

이수진 • 전재수 • 이훈기

정성호 · 임미애 · 이연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

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0조의32(투자 · 상생협력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촠 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2)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 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 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 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 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 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1일-----

(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 제하는 방법 가. ~ 다. (생 략)

③ ~ ⑩ (생 략)

<u>2030</u>
년 12월 31일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혂행과 같음)